

의안  
번호

35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1.

전문위원 강 영 숙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354호

다. 제출일자 : 2024. 11. 07.

라. 회부일자 : 2024. 11. 15.

### 2. 제안이유

- 성북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성북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맞춤형복지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재단 설립목적 적용범위, 재단의 사업 (안 제1조~제4조)
- 나.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정관, 임원, 이사회 구성 (안 5조~제9조)
- 다. 사업위탁, 사업계획서, 지도감독, 공무원 파견 등 (안 제13조~제19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나. 예산조치 : 소요예산 14,007,391천원 (2025년~2029년 / 5개년)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9. 19. ~ 2024. 10. 10.
  - 의 견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고자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제3조(설립)

-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적용범위, 민법」 제32조1)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을 명시

#### 나. 안 제4조(재단의 사업)

-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복지시설 간 교류·협력 지원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6. 사회복지분야의 교육과 컨설팅에 관한 사업
7.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
8.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생활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업
9.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위탁하는 사업 등
10.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다. 안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제6조(정관)**

- 재단의 기본재산은 성북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

**라. 안 제7조(임원)**

-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도록 하였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도록 함.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 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규정함.

**마. 안 제8조(임원의 직무) 및 제9조(이사회), 제10조(직원)**

-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함. 재단의 사업수행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함.

**바. 안 제11조(출연금 등의 교부) 및 제12조(수익사업)**

-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둬.

**사. 안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와 그 소속 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아. 안 제16조(사업계획서·결산서 등의 제출)

-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자. 안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및 제19조(공무원의 파견)

- 구청장은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차. 안 제18조(지도감독)

- 구청장은 이사장으로부터 재단 운영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고, 재단의 운영 상태 전반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성북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성북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성북복지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추진하며 추진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상위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성북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24. 8.28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복지재단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적합한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대상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 또한 타당성 검토시 성북복지재단 설립 관련 성북구민 의견조사 결과 설립 필요성에 대해 '24. 5~6월중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시 64%가 긍정 답변을 하였고 복지서비스 통합관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 개선과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복지관련 업무 및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한다고 응답함. '24. 8월 주민의견 공청회에서도 전문가와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재단법인 설립·운영 계획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성북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지재단이 되도록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성북 복지재단 추진경과〉

- 설립 사전 협의안 방침 수립 ..... '23.6.29
- 재단설립 추진계획안 방침 수립 ..... '23.8.9
- 복지관련 현장 관계자 의견청취 ..... '23.6월 ~ '24.6월
- 서울시 설립 협의(1차)결과 회신 ..... '23.8.28
- 설립 타당성 검토(서울연구원) ..... '23.12.28 ~ '24.8.28
  - 검토 결과 ⇒ 타당성 있음
-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구 홈페이지) ..... '24.8.13 ~ 8.28
  - 결과 공개 ⇒ 의견 없음
-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주민의견 수렴 (주민공청회) ..... '24.8.28
-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심의·의결 (구 운영심의위원회) ..... '24.9.10

## 붙임 1 성북구 사회복지 여건과 현황

### □ 성북구 장래인구 추계(2040년)

(단위:명,건,천원)

구분	총인구	20세 미만	2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인구수	369,977 (100%)	38,520 (10.4%)	139,922 (37.8%)	73,932 (20.0%)	117,603 (31.8%)

<출처> 서울시열린데이터광장

### □ 복지 수요자 증가 : 사회적 고립, 복지 사각지대 증가

- '23년 11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9년 대비 30.2% 증가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현황>

(단위:가구,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11월)	
	가구	수급자	가구	수급자	가구	수급자	가구	수급자	가구	수급자
총수급자	10,058	13,719	11,324	15,634	12,364	16,740	12,797	17,220	13,367	17,861
자활사업 참여자	13,368		15,293		16,385		15,861		17,513	

<자료> 사회보장통계정보(2023년)

- '20년부터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만50세 이상 중장년은 평균 1,216명으로, '20~'21년 대비 '22~'23년 기간동안 돌봄 복지 대상자 48.3% 증가

#### <고령자 돌봄 수요(2020.8~2023.9)>

(단위:명,건,천원)

구분	2020.8~12		2021.1~12.		2022.1~12.		2023.1~9	
	인원	연계건수	인원	연계건수	인원	연계건수	인원	연계건수
지원실적	480	462	1,480	1,883	1,640	2,241	1,265	1,321
비용지급	160,515		537,950		737,250		392,320	

\*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 사회복지 시설과 이용자의 증가

- '19년~'23년(8월)도 성북구 사회복지시설은 146개소 → 192개소(45개, 30.8% 증가), 정원은 4,839명 → 5,270명(431명, 8.9% 증가)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이며 자치구 중 15번째로 많음
- 인구 천명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42명으로 서울시 전체 분포와 비슷한 수준

<성북구 사회복지시설(법정 시설 및 기관)>

(단위:개소,명)

연도	인구수	시설수*(인구 천명당 비율)	입소자수	정원수
2019	442,650	146(33.0%)	1,451	4,839
2020	438,051	156(35.6%)	1,477	5,023
2021	437,153	172(39.4%)	1,637	5,364
2022	430,397	189(44.0%)	1,681	5,385
2023.11	425,647	192(44.8%)	1,878	5,270

\* 시설 : 기타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의 총계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시설 설치 현황>

구분	사회복지시설 수	비율(%)	순위	개소/천명
서울시 전체	4,913	100	-	0.54
자치구	4,892	96.1	-	0.52
성북구	192	3.9	15	0.45

<기초생활 수급권자 현황>

구분	가구	인원(명)	수급자/천명	인구 천명당 수급자 순위
서울시 전체	424,818	320,133	45	-
성북구	13,342	17,839	42	13

<출처> 사회보장통계정보(2023.11월)

## 붙임 2 관련 법규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행 2017. 12. 12.] [법률 제15149호, 2017.12.12 일부개정]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자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 3. 14.]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행 2020. 12. 28.] [보건복지부령 제770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8.> [전문개정 2011. 9. 1.]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 9. 1.]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

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2020. 12. 28.>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문개정 2011. 9. 1.]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전문개정 2011. 9. 1.]